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아이수루 의원입니다.

□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현행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관련하여, 지원 대상을 ‘6개월 이상 계속해 서울시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’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□ 그러나 결혼한 이주여성 등 외국인 임산부는 주민세와 지방세 등 납세의 의무를 이행함에도 불구하고,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교통비 지원의 혜택을 받지

못하고 있습니다.

- 이에 서울시의 임신부 교통비 지원 대상 기준을 개선하여, 차별행정 논란을 해소하고 ‘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’는 조례의 취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